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9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예산

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9년도 11월17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1월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 12.7 상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 12.20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안이유

-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군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위함.

나. 주요골자

-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08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1억 7,400만원이 특별회계가 66억 3,900만원이며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97억 8,700만원, 세외수입 92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8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 105억 8,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6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1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5,600만원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76억 9,100만원, 사업예산 392억 2,900만원, 채무상환 10억 5,600만원, 예비비등 6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경상예산 3억 3,700만원, 사업예산 40억 9,900만원, 채무상환 20억 6,800만원, 예비비등 1억 3,500만원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허해성)

○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총규모는 808억 1,24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831억 5,718만원대비 2.8%인 23억 4,537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억 8,833만원이 감소한 757억 6,270만원이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 5,704만원이 감소한 73억 9,574만원이 각각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세입

- 일반회계세입은 '99년대비 2.1%가 감소한 757억 6,207
만원으로 이는
 -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97억 8,737만원, 세외수입 92억 9,881
만원,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18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 105억
8,100만원, 보조금이 126억 4,0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총규모는 97억 8,737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1억 5,96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세입수입 총규모는 92억 9,88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규모
에 12.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27억 8,204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 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동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에 기인하고 있고

-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 균형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예산규모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과는 달리 교부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11%가 증가된 31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세중 전화세, 주세의 전액, 토지초과 이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재원이 되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따라 도로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등 법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8%인 29억 4,656만원이 늘어난 105억 8,100만원으로서 증가이유는 군비의 가중한 부담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계속 논란이 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0억이 늘어난 데 주원인이 있고. 수정예산 편성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6%인 20억 3,38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7%인 29억 8,873만원이 감소되어 총 28.4%가 줄어든 126억 4,054만원으로서 국고보조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라 도비보조만 편성한 것으로서 확정내시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인 감소 불안요인은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일반회계 세출

- 행정과목인 세세항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예년에 비해 17억 5,58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9년도 삭감되었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즉 가계지원비 250%가 새로 계상되어 증가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극복하지 못할 것임

지방채상환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상환노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기준을 훨씬 넘어선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도비 확정내시를 대비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시 1%선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 운영, 기획관리, 공보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으로 총 184억 5,004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무원 인건비등 기획관리 예산운영이 58%인 104억 7,963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보건, 환경관리, 사회복지, 생활보호, 주택사업, 지역사회개발로 구분되어 전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의 31%를 차지하는 총 229억 5,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지역경제관리, 관광관리, 산림자원 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으로 구분되어 총 279억 765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37.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55억 4,572만원이 감소된 바 감소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수산 개발비 농업기반조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2,837만원이 줄어든 2억 92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02%가 증가한 46억 4,897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10억 5,590만원, 예비비 35억 9,3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국도비 확정시 군비부담을 대비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총 7개사업에 66억 3,870만원으로서 '99년대비 7억 5,704만원이 감액되어 10.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이상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2000년도 예산은 뚜렷한 수입재원이 없어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 일부의 사업예산에 있어 국도비 확보없이 순수 군비만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있고 공공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 특히 19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사회단체보조에 있어 우리군은 예산편성지침상 지원상한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원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지원만 해주고 분석을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1999년도와 비교할 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일부는 예산서상에 절감편성하는등 예산절감 노력이 엿보인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관사매각 3동에 대하여 ?	○ 남산연립 지도소장, 천변리 공중보건의, 중리 부군수 관사 3동임
○ 공시지가 3%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토세가 증가한 이유?	○ (주) 보광의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과표가 상승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내국세의 몇%로 세입을 추계하였는지?	○ 15%를 적용했음.
○ 지방양여금에 대하여는 ?	○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음.
○ 골재낙찰차액이 감소한 이유?	○ 하천골재 고갈상태에 기인하고 있음.
○ 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할용의가 없는지?	○ 좀더 검토해 보겠음
○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 양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 하수종말처리장 삭감이유는?	○ 일부조정에 있어 삭감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
○ 직행버스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 도서관 사항이므로 협의해 보지 않았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불요불급한 경비등 현실성 및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과 가중한 군비부담의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삭감조치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으로 조정

나. 수정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행운의 민원인의 날 운영 1,500천원, 민원관광 안내도 제작 10,000천원, 청내대학 개설 물품구입 5,000천원, 출향인 수첩제작 3,000천원,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42,000천원, 구경찰서 부지정비 2억, 부대비 2,500천원, 사회개발비 SUMMER 레포츠축제 30,000천원, 스노우 카레이스 지원 20,000천원, 전국수석회 전국회원전 지원 30,000천원, 해피700 춘사영화제 지원 50,000천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 2,400천원, 경제개발비중 평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전국) 5,000천원, 평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사진작가협회)지원 30,000천원 홍보영상물 CD제작 20,000천원, 관광가이드북 제작 15,000천원, 평창군 여행상품집 발간 20,000천원, 산채 야생화 종묘구입 및 식재 20,000천원, 특화작목(산양산삼) 시범단지조성 10,000천원, 포도재배단지 조성지원 27,000천원, 평창군 대관령한우 판매점 간판 22,500천원, 경주마차량수송지원 98,000천원, 청사테니스장 설치 50,000천원 농어촌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52,000천원등 총 7억 6,590만원을 삭감하여 절감편성한 385만원을 부기별로 증액하고 잔액 7억 6,205만원을 경제개발비 농촌마을도로에 편성하여 의결하였음.

8. 심 사 결 과

- 일반회계 : 수정의결
- 특별회계 : 원안의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
- 새천년 21세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예산편성이 없고 매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100%로 미집행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과 기본적인 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사장은 물론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임.
- 일부예산이 공공수요나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특정 소수인 이익을 위하여 집중·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농업분야 기술개발·연구, 대체작목 개발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대체작목인 고냉지양파에 대한 도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각종 농업분야 지원에 있어 수혜의 폭을 넓히는 예산편성 의지가 미흡
- 실과소장은 자기업무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기부서의 꼭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 예산부서에 예산만 넘겨놓고 나몰라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등 군수의 한해의 군정의지가 예산편성과는 상충되는 예산편성이 계속되고 있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시 실과소장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으로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고 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 설명미숙으로 사업계획이 의회에 잘못 전달되는 일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반성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삭감된 예산의 잘못을 예산부서로 떠넘기는 식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민간 및 단체 지원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등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집행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액할 것은 감액 조치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나, 민간등의 지원요구액 전액을 의회에 제출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사례는 편성, 심의, 집행등 예산체계가 잘못 흐르고 있음.
- 예산 심의과정에 의회의 취지가 왜곡되어 지원 유관기관에 전달되는등 의회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와 사업예산을 잘못 예측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반성하여야 할 것임.
-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계속비 승인대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나 사업시작시는 약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놓고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은 원칙과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음.
- 1999년도 사업중 문제점으로 제기된 축제행사에 있어 2000년도 집행부의 통폐합 의지 표명과는 달리 축제행사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붙 임 : 2000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조서1부 . 끝 .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의결조서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단위 천원)

회 계 명	지방자치단체 재출 예 산 액	수정예산액	증 감
계	86,557,910	86,557,910	
일반회계	79,739,208	79,739,208	
특별회계	6,818,702	6,818,702	

○ 제2조 ~ 제7조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수정의결 내역

가. 세입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재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86,557,910	-	-	86,557,910	
일반회계	79,739,208	-	-	79,739,208	
특별회계	6,818,702	-	-	6,818,702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 액	증 액		
계	86,557,910	765,900	765,900	86,557,910	
일반회계	79,739,208	765,900	765,900	79,739,208	
특별회계	6,818,702	-	-	6,818,702	

○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계			79,739,208	765,900	765,900	79,739,208	
1000 일반행정비			18,602,576	314,000	725	18,289,301	
1200 일반행정비			18,055,516	314,000	725	17,742,241	
	1240 자치행정		5,061,785	61,500	725	5,001,010	
		1241서무관리	2,980,622	47,000		2,933,622	공무원국내 대학위탁교육 비△42,000 청내대학 개설물품 구입△5,000
		1244민원실운영	237,531	11,500	575	226,606	행운의민원인 의날운영 △ 1,500 민원안내도 제작△10,000 철감수정575

과 목			지방자치 단체 재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1245일선행정 조직운영	635,073	3,000	150	632,223	출향인수첩 제작△3,000 절감 150
		1250 재우행정	1,737,733	252,500		1,485,233	
		1255 재산관리	1,308,194	252,500		1,055,694	구경찰서부지 정비 △200,000 구경찰서부지 정비부대비 △2,500 청사테니스장 설치(도암) △50,000
		2000 사회개발비	26,045,833	132,400		25,913,433	
		2100 교육및문화비	3,553,024	132,400		3,420,624	
		2110 문화예술	1,946,484	82,400		1,864,084	
		2111 문화진흥	1,929,084	80,000		1,849,084	전국수석회 전국회원전 지원△30,000 HAPPY700 춘사영화제 지원△50,000
		2122문화재관 리	17,400	2,400		15,000	백룡동굴 감시원보상금 △ 2,400
		2120 체육청소년	1,606,540	50,000		1,556,540	
		2121 체육진흥	1,543,230	50,000		1,493,230	SUMMER 레포츠축제 △30,000 스노우카레이 스지원 △20,000

과 목			지방자치 단체재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3000 경제개발비			33,025,626	319,500	765,175	33,471,301	
3100 농수산개발비			10,975,081	147,500	1,125	10,828,706	
	3110 농정관리		9,091,693	27,000		9,064,693	
		3113농산관리	804,833	27,000		777,833	포도재배단지 조성지원 △27,000
	3120 축수산진흥		856,559	120,500	1,125	737,184	
		3121축산행정	806,159	120,500	1,125	686,784	평창대관령 한우판매점 간판△22,500 절감1,125 경주마수송 차량지원 △98,000
3200 지역경제개발비			1,099,078	90,000	2,000	1,011,078	
	3230 관광관리		335,220	90,000	2,000	247,220	
		3231관광관리	252,628	90,000	2,000	164,628	평창군관광 사진공모전 △5,000 홍보영상물 CD제작 △20,000 관광가이드북 제작△15,000 절감2,000 평창군관광 사진공모전 (사진작가) △30,000 평창군여행 상품집발간 △20,000

과 목			지방자치 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 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20,383,782	30,000	762,050	21,115,832	
	3310	산림자원개발	6,843,404	30,000		6,813,404	
		3313 산림보호	2,327,920	30,000		2,297,920	산채야생화 종요구입및 식재 △20,000 특화작목(산 양산삼)시범 단지조성 △10,000
	3330 건설관리		10,558,276		762,050	11,320,326	
		3334 마을안길 정비	833,500		762,050	1,595,550	농촌마을도로 포장 762,050
3400 교통관리비			567,685	52,000		515,685	
	3410 교통행정관리		335,685	52,000		283,685	
		3411 교통행정	312,546	52,000		260,546	농어촌오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52,000

200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99.12.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과 재원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 군의 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5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인 5,74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6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1,331백만원, 지방양여금 29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9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0백만원 감소하였음.

다.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203백만원, 사업예산 8,15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2,79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7백만원, 사업예산 17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